

발 간 등 록 번 호

11-1140100-000124-01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 부패방지 · 행정심판 · 제도개선  
[www.acrc.go.kr](http://www.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 부패방지 · 행정심판 · 제도개선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간하며...

대한민국은 2013년 기준 수출규모 세계 7위, 교육수준 세계 2위, 국가브랜드 13위 등 전 분야에서 그 위상을 뽐내고 있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이러한 외형적 성과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문제점과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시는 이러한 아픔과 슬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부터 스스로 각성하여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는 청렴성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위원회가 2010년 9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청렴성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운영 중인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시민 또는 외부 전문가가 독립된 제3자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부패 취약분야 등에 대하여 감시·조사 등을 하는 사전 예방적 부패 통제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기능을 하며 주요 공공사업의 계약, 인·허가 뿐 만 아니라 정보 공개, 인사채용 분야까지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공공기관의 특성과 제도 운영 방식, 운영 의지 등에 따라 청렴시민감사관의 권한과 역할, 성과 등에 차이가 있고 제도 운영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업무를 수행하는데 일부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는 각 공공기관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청렴 시민감사관 제도의 이해를 돕고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개요, 필요성, 운영 현황 및 사례, Q&A 등을 수록하였고, 특히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규정, 구성, 지위·예우, 직무·권한, 운영 방법, 책무 등 제도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책을 발간하기에 앞서 현장에서 활동중인 청렴시민감사관과 업무 담당자, 시민 사회단체(행정개혁시민연합), 서울시립대 반부패연구소 등 다수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바라며, 아무쪼록 이 책이 청렴시민감사관과 제도 운영을 담당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나아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우리 사회 전반의 청렴성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청렴시민감사관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 CONTENTS

## I. 청렴시민감사관 개요

1. 청렴시민감사관의 개념	10
2. 유사 개념과의 비교	11
3.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필요성	15
4.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특징	17
5.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기대 효과	18

## II.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개요

1. 제도 운영 현황	22
2. 제도 운영 소개	24

## III. 제도 운영 제언

1. 운영 규정(설치 근거)	46
2. 구성(자격요건, 위·해촉, 임기)	47
3. 지위 및 예우	50
4. 직무 및 권한	51
5. 운영 방법	55
6. 직무 수행 지원	58
7. 책무	58

## IV.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관련 주요 Q&A 및 부록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관련 주요 Q&A	62
부록(업무 활용 서식 예시)	67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 I

---

## 청렴시민감사관 개요

---

1. 청렴시민감사관의 개념
2. 유사 개념과의 비교
3.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필요성
4.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특징
5.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기대 효과

## 청렴시민감사관 개요

### 1. 청렴시민감사관의 개념

‘청렴시민감사관’이란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하여 감시·조사 및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위촉한 자를 말한다.

즉, 부패방지 및 청렴성 제고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감시·조사 및 평가하고, 이 과정에서 제도개선 등을 제안하는 외부 부패 통제인이라고 할 수 있다.

Tip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을 통하여 제도개선 등을 제안하는 외부 부패 통제 시스템

#### >> 전라남도교육청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라남도교육청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 위법·부당한 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 제도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조사·감시·평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부패행위 사전 예방 및 반부패·청렴 활동의 성과 제고를 위해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 >> 대한석탄공사 청렴옴부즈만 운영규정

제2조(정의)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2012.9.14 개정>

‘청렴시민감사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09년 12월 공공기관의 청렴성 제고를 위하여 각 공공기관에 ‘청렴옴부즈만’을 운영하도록 유도하면서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13년 3월부터 청렴옴부즈만에서 청렴시민감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렴’이라는 용어에서 부패방지 성격을, ‘시민감사관’이라는 용어에서 시민 참여와 감사 기능 성격을 찾을 수 있다.

### 2. 유사 개념과의 비교

#### 가. 옴부즈만과 청렴시민감사관

##### 공통점

시민(국민)의 대리인으로 공공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민원, 부패, 위법·부당 행정행위 및 공무원의 권력 오·남용 등)을 접수하여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요구 또는 권고함으로써 시민(국민)과 행정기관 등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 차이점

##### ① 직무 관할 범위

옴부즈만은 직무 관할 범위가 특정된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 등의 행정 전반을 다루는데 반해, 청렴시민감사관은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분야를 다룬다.

##### ② 자격요건

청렴시민감사관은 옴부즈만과 마찬가지로 공공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청렴성과 반부패 의식 또한 중요한 자격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 옴부즈만(Ombudsman)에 대한 이해

### 1. 옴부즈만의 개념

원래 옴부즈만(Ombudsman)이라는 용어는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대리인(agent)'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옴부즈만은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미국은 호민관(Public Protector), 영국은 커미셔너(Commissioner), 오스트리아는 국민의 변호인(People's Attorney) 또는 수호자(Defender), 프랑스는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중재자(Mediateur)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호민관, 민정관, 행정 감찰관 등으로 번역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스웨덴어 발음 그대로 '옴부즈만(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 [ 참고 ]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의 '고전적(classical) 옴부즈만' 개념(역할과 목적)에 따르면,

"옴부즈만의 역할은 권리의 침해, 권력의 남용, 과실, 태만, 불공정한 결정, 그리고 약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공공행정을 개선하고 정부의 행실을 보다 공개적으로 만들고 또한 정부와 공직자들이 국민들에 대해 더욱 책임성 있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옴부즈만은 단순히 민원 업무뿐만 아니라 훨씬 광범위하게 부패 방지, 인권보호, 행정의 투명성, 공직자의 책임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한다.(부패방지 위원회, 2004)

### 2. 옴부즈만의 일반적 특성(국민권익위원회, 지방옴부즈만 운영 가이드 라인, 2012)

- ① 행정부 및 입법부로부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 ② 법률·행정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
- ③ 수행 범위의 다양성(불법·부당, 부작위, 과실, 신청에 대한 무응답, 응답의 지연 등)
- ④ 간접 강제성(직접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취소 및 변경 요청 또는 권고 성격)
- ⑤ 신속한 처리 및 접근 용이성
- ⑥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대개 무료
- ⑦ 대외 공표성(연차 보고서 작성 공개 등)
- ⑧ 대부분 개인의 고충 민원과 관련

## 나. 감사와 청렴시민감사관

청렴시민감사관은 외부 통제 수단으로서 내부 통제 수단인 감사(내부 감사)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즉, 청렴시민감사관은 원칙적으로 감사와 같이 강제적이거나 직접적인 감사 권한이 없으며 감사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청렴시민감사관은 활동 주체, 절차적 측면 및 판단 기준에서 감사와 차이가 있다.

### 활동 주체

감사는 활동 주체가 법률이나 규정에 따른 기관 내부 구성원(감사담당자)인 반면, 청렴시민감사관은 기관 외부에서 위촉한 시민 또는 전문가이다. 감사는 행정 절차나 관행을 익숙하여 제3자적 시각을 갖기 어렵지만, 청렴시민감사관은 해당 기관의 행정 절차나 관행을 제3자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므로 보다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절차적 측면

감사는 사후적 성격이 강하고 청렴시민감사관은 사전적 성격이 강하다. 일례로 계약 업무의 경우, 감사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 처리 과정을 조사하여 적용 기준상 미비점, 비리 및 부패행위 등을 찾아내는 것이다. 반면에 청렴시민감사관은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 혹은 진행 중인 사안을 감시·조사 및 평가하여 정당한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비리나 부패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청렴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감시 과정 등을 통하여 발견한 제도적 미비사항이나 청렴성 저해 요인 등을 개선 권의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판단 기준**

판단 기준에서도 감사와 청렴시민감사관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감사는 법규 등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만 판단할 수 있지만, 청렴시민감사관은 법규 등 정해진 규정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건전한 상식 수준(합목적성 등)을 통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즉 유연한 판단이 가능하며 이러한 유연성은 부패관련 제도개선이나 고질적인 민원처리 과정에서 유용하다.

내부감사	청렴시민감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내부적 시각</li> <li>· 사후적</li> <li>· 개개인의 비리 적발 중점</li> <li>· 법규 등에 의한 판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외부적 시각(제3자적)</li> <li>· 사전적(예방적)</li> <li>· 비리 사전 예방, 제도 개선 건의·제안</li> <li>· 법규 등, 건전한 상식에 의한 판단(합목적성 등)</li> </ul>



### 3.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필요성

#### 가. 시대 흐름상 필요성

한국은 과거 압축 성장 시대를 거치면서 성과를 최우선 목표로 여겨 왔다. 이 과정에서 뇌물공여나 부정부패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용인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세계와 경쟁·협력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관행이 용인될 수 없다.

현대 국가의 일반적 추세를 보면 행정의 복잡·다양성 및 전문화 경향으로 공공기관의 행정 재량권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침해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패 개연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기능과 부패방지 및 비리근절의 한계가 표출되는 등 외부 통제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외부 통제 수단으로서의 옴부즈만은 현대적·국제적으로 고충 등의 민원조사·처리에서 부패방지, 인권보호 등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부패방지(예방)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역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나. 공공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우리나라 공공행정 분야의 절차적 투명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란 평가다. 2014년 9월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국가 경쟁력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부패로 인한 공직자의 의사결정지수에서 전체 144개 국가 중 79위를 차지하였으며, 정책 결정의 투명성(Transparency of government policymaking)은 133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발표한 2014년 부패 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는 총 175개 조사대상 국가 중 43위로 경제 규모에 비해 낮은 순위에 머물러있다.

반면 부패인식지수 상위 그룹 국가들은 해마다 큰 변동 없이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모두 높은 투명성, 공정한 사회, 건강한 거버넌스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분야를 감시·조사·평가함으로써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공행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유용하다.



## 4.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특징

### 가. 절차적 투명성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절차적 투명성’이다. 즉, 청렴시민감사관은 주요 공공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의 ‘추진과정’을 감시·조사·평가함으로써 공공행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공사, 용역, 구매 등 계약 업무에 있어서 계약 이전 단계부터 계약 이행 완료 단계까지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을 통하여 계약의 정당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할 수 있다.

### 나. 고객(시민, 국민) 지향성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두 번째 특징은 ‘고객 지향성’이다. 즉, 청렴시민감사관은 기관의 감사 절차보다 간편하고, 독립적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고객은 청렴시민감사관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관과 고객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중립적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처리 과정에서 문제(민원)가 발생하게 된 제도의 내용과 절차까지 고려하여 개선을 요구·건의하므로 고객 지향적 성격이 강하다.

### 다. 보완성

청렴시민감사관의 세 번째 특징으로 ‘보완성’을 들 수 있다. 제도나 절차 등 기관의 시스템에 익숙해서 내부인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문제점을 짚어주는 외부의 시각은 내부감사나 일반감사 등 내부 부패 통제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5.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기대 효과

### 가. 행정의 투명성 증대 및 신뢰성 제고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를 감시하여 제도 개선을 건의·요구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제3자적 입장의 청렴시민감사관은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조사·평가 활동 및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요구를 주요 역할로 하기 때문에 직무 수행 과정에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해당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 나.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각종 부조리와 비리 등 부패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각종 인·허가, 현장 지도·단속 등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 부패행위의 발생은 공공행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청렴시민감사관은 주요 공공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하여 감시·조사 및 평가하여 부패와 관련한 잘못된 제도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의 투명성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 다. 효율적인 예산집행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각종 부조리나 비리 등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다. 부패나 비리, 그리고 제도 미흡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이다. 특히 공공사업 계약 업무의 경우 계약 이전 단계부터 입찰, 사업자 선정, 사업시행, 사업종료 및 사후 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청렴시민감사관이 감시·조사 및 평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발생 후 시정을 위한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집행 제도로 볼 수 있다.

#### Tip • 운영 사례

○○○○년 ○월 ○○기관의 경우, 청렴시민감사관은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활동 중 당초 기본설계에서 제시한 공법이 실시설계 단계에서 임의로 변경되어 시공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였다. 감사 결과, 기본설계 변경에 대한 승인절차 누락, 공법 변경을 위한 실시 설계보고서 허위 작성 등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 공사 관계자를 교체하고 공사비 357백만원을 회수하였다

### 라. 근원적 제도 개선을 통한 부패 관행의 근절

청렴시민감사관은 제3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내부에서 관행으로 여겨지거나 묵인되고 있는 각종 부조리와 비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정요구와 개선 권고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 내부의 관행화된 부패 근절에 기여할 수 있다.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 II

## 청렴시민감사관제도 운영 개요

1. 제도 운영 현황
2. 제도 운영 소개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개요

### 1. 제도 운영 현황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舊 '청렴옴부즈만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09.12)하여 '10년부터 부패방지시책평가에 포함하면서 확산되었다.

'13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기관(중앙행정기관 등 215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다수 기관이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명문화된 규정(법령·훈령, 조례, 규칙, 사규 등)을 마련하고 있고, 시정 요구 등 청렴시민감사관의 반부패·청렴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청렴시민감사관의 시정 요구 등에 대한 해당 기관의 수용·반영이나 제도개선, 사후관리(실태·이행 점검) 활동 등 실질적인 제도 운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평가 대상 기관 중 211개(98.1%) 기관이 제도를 도입하였고, 법령·훈령·조례·규칙·사규(94.0%, 202개) 등으로 운영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청렴시민감사관에게 시정요구 이상(83.7%, 180개)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제도 운영 면에서 시정요구, 의견제시 등 운영 실적이 있는 기관은 95.8%(206개)이나, 시정요구 등에 대한 해당 기관의 수용·반영 등 실질적 운영 기관은 14%(30여개 기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Tip • 운영 사례

##### 사례1(실질적 운영)

○○○○년 ○월, 청렴시민감사관은 포장 공사현장 점검 중 공사 현장의 시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관련 시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고, 보관된 시료의 시험을 요청하였다. 이에 해당 ○○기관에서는 청렴시민감사관이 제기한 문제점을 적극 수용하여 시료를 공인기관에 시험하였으며 그 결과 두께, 아스팔트 함유량, 공극률 등이 시방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기 시공된 포장 부분을 전면 철거하고 재 시공토록 하였다. 이후 해당 건설회사에게는 규정대로 벌점을 부과하여 관급 공사 입찰에 불이익 조치를 하였다. 이러한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내용은 해당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전국 각 현장에 전파되어 철저한 품질관리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 사례2(형식적 운영)

○○기관의 경우, 새로 부임한 상임감사의 제안으로 ○○○○년 ○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고 2년여 동안 월 1회 활동을 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현장 감시활동으로 부당한 공사비 집행 사례를 지적하여 사업비 357백만원을 회수하였고, 현장 감리제도 운영 개선을 건의하여 이를 해당 기관에서 받아들임으로써 사업비 24억원을 절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상임감사 교체 후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이 중단되었고 임기가 종료되었다. 그 이후 새로운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 만한 성과없이 명목상으로도만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 2. 제도 운영 소개

### 가. 제도 도입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운영 규정(설치 근거)을 제정하여야 한다. 운영 규정은 기관 상황에 따라 훈령·예규 등에서부터 법령(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정관, 사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정하여 지속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도 명칭은 행정의 투명성·책임성, 부패방지(예방) 등 청렴 관련 활동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좋다. 예컨대, 청렴시민감사관, 청렴옴부즈만, 시민(감사)옴부즈만 등을 들 수 있으며 실제로 대다수 기관들이 이와 유사한 명칭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유사 명칭들을 통칭하여 청렴시민감사관이라 하겠다.

####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청렴도를 제고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 전라남도교육청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 수요자의 교육행정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교육에 대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청렴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한국철도시설공단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권고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6.25)

### 나. 지위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에 있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적 시각을 지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관(장)의 특정부서에 소속되지 않고 기관 외부인(시민 또는 전문가)으로서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청렴시민감사관은 무보수·비전임적 성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실질적 운영(독립적 지위 보장 등)과 기관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의 보상과 근무형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청렴시민감사관은 기관장 직속의 감사부서 또는 혁신관련 부서 등으로부터 업무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4조(직무의 독립성)** 시민감사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2.5.22.)

#### » 한국철도시설공단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 제3조(독립성)

① 옴부즈만은 이사장의 자문기구로 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개정 2011.3.8.)

»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지침

제5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시민감사옴부즈만 설치 등)

① 시민감사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소속으로 하되,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지위를 가진다.

Tip • 청렴시민감사관 지위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사례

○○기관의 경우, 시민단체에서 추천받은 민간인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운영하는 방식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공개 모집하여 기관장이 임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로 인하여 청렴시민감사관의 신분이 보장되고 처우가 개선되었다는 평가와 결과적으로는 감사실 소속의 감사관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함께 존재한다. 이는 신분 보장 및 처우 개선이라는 측면과 청렴시민감사관의 독립적 지위간의 균형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다. 자격 및 구성

자격

청렴시민감사관은 공공기관의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청렴성 그리고 높은 수준의 반부패 의식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Tip • 청렴시민감사관이 부패방지나 청렴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제3자적 입장의 독립적 직무 수행 의지가 부족할 경우 제도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특히 전문성은 관련 기관(학회,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상당 기간 재직할 경험이 있거나, 관련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망이 높고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역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 방위사업법(방위사업청)

제6조(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⑤ 옴부즈만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옴부즈만으로 위촉을 받기 전 2년 이내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할 경우에는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방위사업 관련 학과, 회계학과, 법학과 또는 행정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3.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있었던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4. 그 밖에 방위사업 분야에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 전라남도교육청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구성 및 위촉)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인 자
2.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 경력 5년 이상인 자
3.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경력 3년 이상인 자
4.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교육행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구성)

- ① 옴부즈만은 대표옴부즈만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3.8, 2011.12.9)
  - 1.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 관련분야 및 회계학, 법학, 행정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3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
  - 2.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3. 시민사회단체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자
  - 4. 공기업에서 1급 이상 직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 5.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 6. 기타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고 공기업의 특성과 관련성이 있는 전문가

» 한국주택금융공사 윤리경영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기준

제5조(구성)

- ① 옴부즈만은 대표옴부즈만 1인을 포함한 3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
  - 1. 경영, 경제 관련분야 및 회계학, 법학, 부동산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3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
  - 2. 변호사, 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3. 시민사회단체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자
  - 4. 공기업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 5.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 6. 기타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고 공사 업무와 관련 있는 전문가

구성(모집, 위촉)

① 모집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거나, 관련 분야 전문 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의뢰)받아 모집할 수 있다.

※ 공개모집 : 기관 홈페이지, 공공기관 채용 웹사이트(나라일터, 알리오 등), 일간지 등

» 방위사업법 시행령(방위사업청)

제5조(옴부즈만의 구성 및 임기 등)

-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옴부즈만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한다.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3조(시민감사옴부즈만 설치 등)

- ③ 시민감사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해 시장이 임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감사청구 심의회의 심의 및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0.27, 2012.5.22.)

② 위촉

청렴시민감사관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기관장이 위촉할 수 있다.

또한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관장 위촉 전 의회(지방자치단체) 또는 내부 선정위원회(내부 구성원+외부 민간인)의 의결을 거친 뒤 위촉할 수도 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시민감사옴부즈만 설치 등)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및 추천에 의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제10조(옴부즈만의 위촉 및 해촉)

- ① 옴부즈만은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선발심사를 통해 최종 추천된 자 중에서 청장이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촉한다.
- ② 옴부즈만 최종 추천자 선발심사를 위해 선발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해서는 옴부즈만 운영훈령으로 정한다.

청렴시민감사관의 모집과 위촉 형태를 요약하면 대개 아래와 같다.

- + (기관 공개모집+내부 심사) 기관의 주관 하에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한 신청·접수 후 내부 선정위원회 등을 통한 심사·위촉
- + (추천+내부 심사) 관련 전문 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거나 의뢰하여 내부 선정위원회 등을 통한 심사·위촉

다만, 청렴시민감사관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관과 이해관계에 있는 임·직원이나 기관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은 위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전라남도교육청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구성 및 위촉)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4. 교육감 관할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또한,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시 주의할 점은 공개모집 등 위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위촉하거나(가령 기관장이 임의로 위촉 등) 임기와 신분 보장 없이 자문단 형식의 인력 pool을 구성하여 필요시 초빙하는 형식의 제도 운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와 연임 횟수 등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독립성 확보 및 신분보장을 위해 임기와 신분에 관한 사항을 운영 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청렴시민감사관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공정하고 독립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에 의하여 해촉될 수 있다. 해촉사유, 해촉절차 또한 운영 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방위사업법 시행령(방위사업청)

제5조(옴부즈만의 구성 및 임기 등)

-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옴부즈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은 옴부즈만이 제2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제1호·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책임감의 결여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업무수행을 기피하는 경우
  3. 업무수행 중 보안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4. 제7조제5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후에 법 제6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밝혀지거나 법 제6조제8항 각 호의 직을 겸직하게 된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윤리경영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기준

제7조(임기 및 신분보장)

-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4.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라남도교육청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임기 및 신분보장)

-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은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4. 제1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사회적·도덕적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인원 또한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기관 상황(규모 등)과 수행 업무를 고려하여 운영규정에 명시하면 된다.

다만, 청렴시민감사관을 복수로 위촉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 회의(의사결정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청렴시민감사관 회의를 운영할 경우 대표 청렴시민감사관을 둘 수 있으며, 의결 정족수 등을 고려하여 위촉 인원 범위(가급적 3명 이상 홀수 권장)를 정할 수 있다.

청렴시민감사관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의 대표자와 회의 운영방식 등을 운영 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 ①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 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개정 2012.5.22)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전임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임용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5.22)
- ③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중 선임자 순으로 운영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운영위원장이 사전에 직무대행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지명된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우선하여 운영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5.22.)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세칙

제6조(옴부즈만 회의 및 대표 옴부즈만)

- ① 기술원은 옴부즈만의 활동 중 옴부즈만 전원이 모여서 협의·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옴부즈만 회의를 운영하며, 회의는 매년 4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대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하며, 옴부즈만 회의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 ③ 대표 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표 옴부즈만이 미리 지명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대표 옴부즈만은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안건을 발굴하며, 안건은 가급적 제도 개선 효과가 크고 기술원 신뢰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을 선정하여 회의에 상정한다.

Tip • 운영사례

○○ 공공기관의 경우, ○○○○년 ○월부터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기관은 청렴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는 조직내 전반적인 분위기로 인하여 기관장으로부터 운영부서에 이르기까지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그 동안 기관장이 교체되었고, 운영 부서장이 두 차례 바뀌었음에도 제도 자체는 일관성을 가지고 유지되고 있다. 이 기관의 성공 요인을 살펴보면, 청렴 시민감사관의 고유한 역할을 확실히 인식하고, 청렴시민감사관이 제시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점이다. 또한, 청렴시민감사관도 그 책임감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성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문제점이 발견될 때에는 그 동안의 관례에 개의치 않고 제3자적인 균형된 시각에 의한 문제해결을 권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여러 번 내부적인 마찰을 겪기도 했지만, 이제는 4년여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하여 제도가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라. 직무 및 권한

직무

각 공공기관 청렴시민감사관의 대표적 직무는 아래와 같다.

- ① 주요 공공사업(계약 등) 및 부패 취약분야 감시·조사 및 평가
- ② 부패 관련 민원 조사·처리와 제도 개선 건의·요구
- ③ 시정 요구 등의 이행실태 점검(사후관리)
- ④ 부패방지(예방)·청렴 정책 자문, 평가 및 의견 제시
- ⑤ 부패 예방 교육(행동강령 등)
- ⑥ 감사 요구·참여(감사 동행 등)
- ⑦ 모니터링(민원, 비위 제보, 인사 채용 참관 등)
- ⑧ 그 외 청렴 문화 확산 활동 등

» 한국철도시설공단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 ①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2.4.05)
  - 1. 공단이 시행중인 사업의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열람, 현장 확인 등을 통한 감시·평가 및 합목적성의 확인
  - 2.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지한 부패행위 및 공익신고 관련 사항의 감사요구 및 시정 권고 (개정 2013.6.25)
  - 3. 옴부즈만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4. 옴부즈만이 처리한 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개정 2013.6.25)
  - 5.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 6. 옴부즈만 협의회의 참여
  - 7. 기타 옴부즈만 활동에 필요한 회합에의 참여

» 전라남도교육청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직무 및 권한)

- ①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민원이 제기되어 옴부즈만 회의를 통해 의결된 다음 사항의 조사 및 시정 권고 가. 전라남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의 예산집행과 관련된 민원 나. 기타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제기된 민원
  - 2.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조리 사항에 대한 감사 요구
  - 3. 부패 취약분야 모니터링 및 이에 대한 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 4. 교육분야의 반부패·청렴정책에 대한 제언 및 교육감으로부터 요청받은 반부패·청렴 활동 참여
  - 5. 옴부즈만의 시정 개선 권고 등에 대한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이행 실태 확인·점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직무 및 권한)

- ① 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행정기관 등의 행위로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제출한 사항에 대한 조사·처리
  - 2.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열람,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청렴계약 감시·평가
  - 3.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조정·중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부의한 사건의 조사·처리

» 한국인터넷진흥원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지침

제4조(직무수행 등)

- ① 청렴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1. 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의 발주에서부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관련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감시·평가 및 합목적성의 확인 <개정 2012. 9. 24>
  - 2.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개정 2012. 9. 24>
  - 3.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및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시정·감사 요구 및 관련사항의 감사참여 <신설 2012. 9. 24> <개정 2013.8.23.>
  - 4. 청렴옴부즈만이 권고 처리한 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이행실태조사와 평가 <신설 2012. 9. 24>

» 통일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기능)

-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통일부장관의 조사 요구가 있는 업무·사업에 대한 조사
  - 2. 통일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취약분야에 대한 감시·평가
  - 3. 제1호 및 제2호의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의 권고
  - 4. 제도 또는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의 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 6. 통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청렴교육
  - 7.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

청렴시민감사관은 부패행위(목적, 의심 등)를 제보 받거나 부패 관련 민원을 신청·접수받았을 경우 제보인(민원인) 및 관련자 면담과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제보사항과 민원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제보사항이나 민원제기의 근본원인이 제도와 관련이 있을 경우 기관장에게 개선을 요구·권고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의 개선 요구·권고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청렴시민감사관은 자신이 요구·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사후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만일, 청렴시민감사관이 부패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즉시 감사

부서와 협의하여 감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Tip • 제도 운영 사례

○ 공공기관에서는 1년에 발주하는 턴키공사 규모가 1조원을 상회하다 보니 이와 관련된 업계의 로비 등 평가와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청렴시민감사관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조사·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코자 설문조사 및 토론회 등을 주관하였다. 실제로 턴키공사 관련 공무원, 참가업체, 평가위원 등 600여 명에게 이메일로 설문을 발송하고, 그 결과를 통계 처리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턴키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 기관은 제시된 개선안을 턴키공사 평가 방식 개선에 상당부분 반영하였고, 이후 ○ ○ ○ ○ 부에서도 턴키공사 평가관련 매뉴얼 개정 시 이를 반영하였다.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시활동을 통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조사·평가 방식의 제도개선에 도움을 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권한

각 공공기관 청렴시민감사관의 대표적 권한은 아래와 같다.

- ① 자료 열람·제출 요구, 관련인 진술 및 의견 청취(출석 요구 등)
- ② 절차적 투명성 및 청렴성 제고 등 제도개선 건의·요구
- ③ 투명하지 못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요구, 시정 요구, 관련자의 적절한 조치 요구
- ④ 보고(기관장 등) 및 대외 공표 등

Tip •

대외 공표권의 경우 기관의 보안사항 및 개인 정보 보호 등을 고려하여 공표 수준, 범위, 방법 등 운영 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라남도교육청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직무 및 권한)

- ①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민원이 제기되어 옴부즈만 회의를 통해 의결된 다음 사항의 조사 및 시정 권고
    - 가. 전라남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의 예산집행과 관련된 민원
    - 나. 기타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제기된 민원
  - 2.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조리 사항에 대한 감사 요구
  - 3. 부패 취약분야 모니터링 및 이에 대한 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 4. 교육분야의 반부패·청렴정책에 대한 제언 및 교육감으로부터 요청받은 반부패·청렴 활동 참여
  - 5. 옴부즈만의 시정·개선 권고 등에 대한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이행 실태 확인·점검

» 통일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활동 등)

- ①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관행·업무 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② 옴부즈만은 관련부서 관계자와 합동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③ 옴부즈만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Tip

○○○○년 ○월 ○○ 청렴시민감사관은 ○○기관에서 발주한 ○○시스템 설치공사 사업자선정 평가회를 참관하던 중 2개사가 제출한 자료 중 오자 부분까지도 동일하다는 점에서 2개사 간의 담합을 의심하여 감사를 요구하였다. ○○기관 자체 감사 결과 담합으로 결론을 내려 ○○○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 조사에서도 담합으로 확정하여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공공기관은 공사를 재발주하였고, 그 결과 담합 당시 245억원(낙찰율 99.7%)이었던 ○○시스템 설치 공사는 146억원(낙찰율 75.0%)에 최종 낙찰되었다. ○○기관은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을 통하여 관련 분야의 입찰 질서를 바로잡는데 크게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99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 제도 운영 방법

운영 방식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 수행 방식에 따라 개별 조사 방식, 회의 방식, 현장 확인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① 개별 조사 방식 : 청렴시민감사관 1인이 특정 사안이나 사업에 대하여 개별적·수시적으로 감시·조사·평가하는 방식
- ② 회의 방식(전체회의, 수시회의 등) : 개별 조사 방식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직무 대상 사업·사안에 대하여 회의를 통하여 심의·의결하는 방식(개별 조사와 회의 방식은 혼합·병행할 수 있음)

회의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크게 전체회의, 수시회의, 운영협의회 방식 등이 있다.

첫째, 청렴시민감사관 전체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모든 청렴시민감사관이 대상 사업의 조사 사안을 분배·협의, 결정 사항에 대한 합의, 그리고 기타 청렴시민감사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회의이다.

부패·청렴과 관련된 민원, 계약의 타당성 등을 조사하는 경우 서면 조사나 관련자 면담만으로 불충분하면 현장 방문을 병행하며, 현장 방문 사안은 청렴시민감사관 전체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 전체회의의 안건, 개최 시기, 횟수, 의결 방식 등에 대해서는 운영 규정에 명시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위원장은 자율성 강화 측면에서 위원 중 호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수시회의는 사안에 따라 필요시 개최하는 회의이다. 청렴시민감사관 전원 또는 특정 사안을 담당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이 참석하여 해당 사안을 심의·의결 한다.

Tip•

자료 제공 및 구체적인 설명 등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원 부서 담당자와 해당 부서 담당자가 배석하는 것도 가능

셋째, 청렴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는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관계부서 간 상호 이해를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기관장, 해당 부서, 지원 부서 등으로 구성되며, 연 1~2회 또는 주요 사안이 있을 경우에 개최하는 회의이다.

③ 현장 확인 방식 : 서면 중심의 개별·회의 방식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확인하는 방식

**운영 절차**

일반적으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대상 사업 선정

대상사업 범위는 운영 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좋으며, 청렴시민감사관 회의를 통하여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다.

Tip•

공사, 용역, 구매 등과 같은 계약 업무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행위의 경우 해당 업체의 직접 신고(고발)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주변 관계인들의 민원, 소문,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해 청렴시민감사관이 직접 대상 사업을 정할 수도 있다

② 해당 부서의 자료 제출

청렴시민감사관은 해당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 지나치게 많은 자료를 요구할 경우 해당 기관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적정선을 잘 판단해야 한다.

③ 청렴시민감사관의 자료 검토 및 조사

청렴시민감사관은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④ 1차 조사 보고서 작성

검토한 자료와 조사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1차 조사 보고서(초안)를 작성한 뒤 필요에 따라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등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1차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⑤ 해당부서 검토 및 의견 제출

작성한 1차 조사 보고서를 기관(기관장)에 제출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청렴 시민감사관이 작성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렴시민감사관에게 제출한다.

이것은 청렴시민감사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공식화하거나 대외적으로 공표 하기 전에 해당 부서와 청렴시민감사관 간 상호 의견을 교환하여 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함이다.

⑥ 해당 부서의 의견 검토 후 청렴시민감사관 최종 보고서 제출

해당 부서 의견과 청렴시민감사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 의견을 도출하여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작성한 최종 보고서는 기관(장)에 제출하고 기관(장, 관련 부서)에서는 수용·반영 여부를 결정하여 청렴시민감사관에게 회신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조치결과의 통지 등)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시정·권고 등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바. 수당, 지원 등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 수당 및 사무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에 명시한다.

수당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관련 제 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거나 정관(사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청렴시민감사관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그에 준하는 일정 규모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외부 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청렴시민감사관의 독립적 직무수행에 저해가 될 수도 있다며 우려하기도 한다.

»전남교육청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예산 지원)

- ① 교육감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옴부즈만에게 회의 참석수당, 활동비,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옴부즈만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원 등

청렴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지원을 위한 인력(전담팀 등) 및 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 서대문구는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지원을 위한 전담팀과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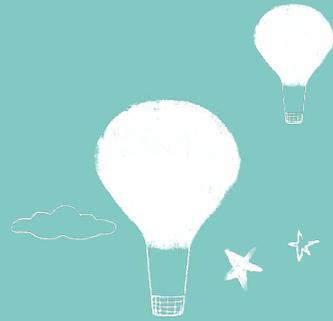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인력 및 예산지원)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 외 청렴시민감사관으로서의 사명감 고취와 대외적 신분 징표를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신분증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신분증의 휴대) 옴부즈만이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 III

## 제도 운영 제언

1. 운영 규정(설치 근거)
2. 구성(자격요건, 위·해촉, 임기)
3. 지위 및 예우
4. 직무 및 권한
5. 운영 방법
6. 직무 수행 지원
7. 책무

## 제도 운영 제언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 간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특히 행정개혁시민연합은 각 공공기관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는 청렴시민감사관(또는 옴부즈만)제도가 일정한 준거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어 부적절한 인물이 선임되는 등 제도 운영에 혼란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청렴시민감사관(옴부즈만) 실천 강령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과 각 기관 운영 담당자의 요청 사항 등을 감안하여 제도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제언을 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운영 규정(설치 근거)

#### 가. 제정 목적 및 형식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법·제도적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행정기관 등은 법령 등으로, 공직유관단체는 정관·사규 등의 형식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나. 적용 범위(직무 관할)

운영 규정의 적용 범위 내지 직무 관할은 다음과 같다.

- 1) 공공기관 및 그 소속·산하 기관
- 2) 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한 기관
- 3) 공공기관의 위탁사무 소관 기관
- 4)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 회의를 통하여 정한 기관 등

### 2. 구성(자격요건, 위·해촉, 임기)

#### 가. 자격요건(예시)

- 1) 「고등교육법」 제2조(같은 조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분야 관련 학과 조·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
- 3)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공기업 2급 이상 임·직원으로 있었던 사람
- 4) 공인회계사·세무사, 변리사, 기술사, 공인노무사, 건축사 등 전문성을 인정 받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단체 소속인 사람 또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Tip** • 시민사회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자격 제한(결격 사유) : 예시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자
5. 해당 공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등

❁ (참고) 행정개혁시민연합은 ‘옴부즈만(청렴시민감사관) 실천강령’으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 옴부즈만(청렴시민감사관)은 공익실현을 위해 기관을 성실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이나 이해관계 집단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
- 옴부즈만(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 활동 경비 이외에 보수를 받거나 유관 영역을 수행하지 않는다.
- 옴부즈만(청렴시민감사관)은 부정부패 비리 전력이 있거나 이에 연루되어서는 안된다.
- 옴부즈만(청렴시민감사관)은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그 활동 결과를 기록·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위·해촉 및 임기

**위촉**

청렴시민감사관은 대표 1인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공개 모집하거나 전문 기관으로 부터 추천(의뢰)받아 기관장이 위촉한다. 위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별도의 위촉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3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해촉**

청렴시민감사관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다만 아래 주요 해촉 사유에 해당시 해촉될 수 있다.

» 해촉 사유 : 예시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2. 위촉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경우
5.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6.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청렴시민감사관 책무를 어겼을 경우
10.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Tip** • 해촉 사유 발생시 감사 부서장 등은 기관장에게 해촉을 건의한다(해촉 사유 명시)

### 3. 지위 및 예우

#### 가. 지위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적 지위를 가진다. 즉, 청렴 시민감사관은 기관의 특정 부서에 소속되어서는 아니 되며 독립된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러한 독립적 지위 보장은 운영 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자료 제출 등 해당 부서와의 원활한 협조 등을 위하여 감사부서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전담 지원 조직·기구를 편성하거나 청렴시민감사관의 대외적 공시(제도 운영 및 활동 내용을 웹사이트 공개 등)를 통해 지위를 보장해 줄 수도 있다.

#### 나. 예우 및 수당

##### 예우

청렴시민감사관을 위한 특별한 예우 규정은 없다. 다만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유관 부서(지원 및 해당부서 등)와 원활하게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수당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관련 제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지급(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운영 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직무 및 권한

#### 가. 직무

1)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조사·평가

① **주요 사업**: 공사, 용역, 물품·구매, 위탁 사업 등 주요 공공사업

② **부패 취약분야**: 인·허가, 현장 단속, 인사 채용 등 각종 부패행위에 취약한 분야

##### Tip

감시·조사·평가는 주요 공공사업과 부패 취약분야 업무의 처리 절차 등 투명성·청렴성 향상과 관련한 모든 사업·업무를 대상으로함

2)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대상 사업 및 분야 선정

3) 부패예방, 청렴성 제고 등 부패관련 제도 개선 건의·요구

4) 부패관련 민원 신청·접수 및 이에 대한 조사·분석

5) 부패방지(예방)와 청렴 정책에 관한 자문, 의견제시

6) 부패방지(예방) 및 청렴 관련 교육(공공기관의 임·직원 등)

7) 시정요구 등에 대한 사후관리(이행 실태 확인·점검 등)

8) 고충 등 민원 처리 및 이와 관련한 각종 불합리한 제도 개선 권고·건의

9) 기타 공공기관에서 정한 사항

»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로 적절치 못한 예

1. 행정심판·소송, 헌법소원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 청구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 또는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당사자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 등 국가기관, 그 밖의 권한있는 행정기관에서 감사·조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사항
4.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국가 기밀 및 대외비에 관한 사항
6. 국회·지방의회 소관 사항 등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로 적절하지 않다고 공공기관장이 판단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의무 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권한

1. 직무와 관련한 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자료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어 열람을 할 수 없는 경우 관계자에게 의견진술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Tip** • 의견 진술 또는 설명 요구를 위하여 관계자 면담과 현장 확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야 함

2. 부패관련 제도·관행 등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그 조치 결과에 대한 회신 요구  
청렴시민감사관의 시정 요구를 받은 기관(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위법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Tip** • 시정 요구의 조치 결과에 대한 회신 요구는 수시로 할 수 있어야 함

3.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결과에 대한 공표

청렴시민감사관은 자신의 활동 내용을 공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공표 절차·방법 등 운영규정에 명시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ip** • 청렴시민감사관의 시정요구 등을 기관(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필요에 따라 그 내용까지 공표할 수 있음

4. 부패행위와 부패취약(의심, 우려 등)분야에 대한 감사 요구

**Tip** •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 요구에 의해 감사한 결과 징계사유 발생 등은 징계요구 건의를, 감경(면제)사유 발생 등은 감경(면제)요구 건의를 고려해 볼 수 있음

5. 기관장 직접 보고(활동 결과 직접 제출, 면담 요청 등)
6.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한 직접 감사 참여
7. 부패관련 민원(비리 제보, 자체 수집 등) 조사 등

>> 제척·기피·회피

제척 : 예시

청렴시민감사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 활동에서 제척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활동 등)
2.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대상 사업 또는 분야와 관련하여 자문이나 용역 수행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대상 사업 또는 분야 업체 등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4.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대상 사업 또는 분야의 감사·조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기피·회피 : 예시

청렴시민감사관 활동과 관련이 있는 자(관계 부서장, 이해 당사자 등)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대표 시민감사관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제척 사유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청렴시민감사관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 5. 운영 방법

### 가. 회의 운영(예시)

1) 회의는 청렴시민감사관 회의와 청렴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 청렴시민감사관(전원 또는 분과별), 지원 담당자(간사 필요시)가 참여하여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결과(시정 요구 결정 등)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하는 회의 (의사 결정을 위한 회의)

+ **청렴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 : 청렴시민감사관, 기관장, 유관(지원 및 해당) 부서장 등이 참석하여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의 보고·청취와 협조·애로 사항 등을 논의하는 회의 (운영 지원을 위한 회의)

2) 청렴시민감사관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 청렴시민감사관을 두며, 독립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 청렴시민감사관은 청렴시민감사관 중에서 호선한다.

3) 대표 청렴시민감사관은 청렴시민감사관 전원의 대표로서, 대외적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으며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운영과 청렴시민감사관 업무를 총괄한다.

4) 청렴시민감사관 회의는 전체회의(전원참석, 주로 정기회의)와 수시회의(전원 또는 분과별 참석, 주로 특정 사안별 부정기회의)로 구분한다.

**Tip** • 청렴시민감사관 회의는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수시 회의는 대표 청렴시민감사관이 소집 가능하며, 전체와 수시 회의는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5) 청렴시민감사관 회의의 의장은 대표 청렴시민감사관이 맡는다. 다만, 대표 청렴시민감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 청렴시민감사관이 미리 지명한 청렴시민감사관, 선임자, 연장자 등이 직무를 대행한다.
- 6) 청렴시민감사관 회의는 활동 대상 사업·분야, 시정요구 사항, 활동 결과 공표 등 청렴시민감사관 활동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다룬다.
- 7) 청렴시민감사관 회의는 합의제로 운영하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등 기관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 나. 직무 수행

- 1) 청렴시민감사관은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2) 청렴시민감사관이 처리한 직무(업무)는 청렴시민감사관이 처리하였음을 표시하고 문서로 작성·관리한다.
- 3)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 결과 등에 대하여 관계자는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4) 청렴시민감사관의 자료 제출 요구 등과 관련한 문서는 인수·인계를 명확히 한다.

- 5)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 성과는 공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6) 청렴시민감사관은 연간 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필요시 지원 부서 협조)

#### » 연간 보고서 내용 : 예시

1. 기관 소개
2.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개요
3. 청렴시민감사관 주요 활동 사례(시정·개선 요구 및 수용 사례 등)
4.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 성과와 향후 과제
5. 관련 자료(회의록, 관련 법령, 각종 서식 등)



## 6. 직무 수행 지원

청렴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행정적 지원으로는 전담팀과 같은 인력 지원이나 사무실 지원 등이 있으며, 재정적 지원으로는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지급 등이 있다. 특히 재정적 지원은 관련 예산 규정에 명시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밖에 필요할 경우 청렴시민감사관 신분 증명서를 제작·활용할 수 있다.

## 7. 책무

- 1)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등 일체의 부패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2) 청렴시민감사관은 혈연·지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직무상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청렴시민감사관은 해당 기관이나 이해 관계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 4)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 수행과 관련한 활동 경비 외에 유관 용역 수행 등 부적절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5)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선물,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의심 받을 만한 행위를 해서도 아니 된다.

- 6)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 둔 이후에도 또한 그러하다.
- 7) 청렴시민감사관은 자신의 직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어야하며 활동 내용은 공개토록 해야 한다.
- 8) 청렴시민감사관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공공기관의 부패 방지 및 청렴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 9) 청렴시민감사관은 각종 부정, 비리 등 부패행위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창의적으로 활동한다.
- 10) 위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공공기관의 행동강령, 공무원 복무 등에 따른다.

**Tip** • 청렴시민감사관은 책무 준수를 위하여 서약한다(서약서)



A decorative graphic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It features a grid of small white plus signs on a light orange background. Overlaid on this grid are several white stars of varying sizes and orientations, arranged in a curved path from the bottom left towards the top right.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 IV

---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관련 주요 Q&A

---

주요 Q&A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관련 주요 Q&A

**Q1**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1**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직접적인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에서 간접적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Q2** 청렴시민감사관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요?

**A2** 청렴시민감사관은 공공기관의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청렴성, 그리고 반부패의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Q3** 청렴시민감사관은 외부에서 위촉한 자 이어야 하나요?

**A3** 청렴시민감사관은 감사(내부)와 같은 내부 통제수단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외부에서 위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4**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A4**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와 관련된 모든 직무는 대상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주요 공공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조사 및 평가를 들 수 있습니다.

**Q5** 청렴시민감사관의 권한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A5** 권한 또한 직무와 마찬가지로 명확히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자료 제출·열람, 시정요구와 제도 개선, 사후 이행 실태 점검·확인, 감사 요구 등과 같은 권한이 부여 되어야 합니다.

**Q6**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은 어떤 것이 있나요?

**A6**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 성격으로 회의 수당, 강의 수당, 출장 여비, 기타 활동비(자료 조사 등) 등이 있습니다.

**Q7** 고충 등 민원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청렴시민감사관제도를 별도로 운영해야 하나요?

**A7**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기관에 따라 다양합니다. 기존에 운영하는 제도가 부패방지 기능을 함께 수행할 경우 별도로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Q8** 청렴시민감사관이 직무 수행 중 부패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8** 부패행위 의심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감사부서에 감사요구를 할 수 있으며, 확실한 증거 수집·확보 등 부패행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즉시 감사부서와 협의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해당기관(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검찰, 경찰)에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9** 청렴시민감사관 관련 문서(생산·접수)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A9** 청렴시민감사관이 생산·접수한 문서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및 사무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문서 관리에 대하여는 운영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10** 청렴시민감사관과 감사(내부감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10** 감사는 기관 내부적 시각에서 법규적 판단 기준을 가지고 개별적 비리 적발과 처벌 등을 하는 사후적 통제 수단인 반면, 청렴시민감사관은 기관 외부의 제3자적 시각으로 법규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식과 같은 합목적성까지 판단 기준으로 삼아 비리 등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는 사전적 통제 수단입니다.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

부 록

---

업무 활용 서식 예시

###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장

#### 위 촉 장

성 명 :

주 소 :

위촉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위 사람을 『(운영규정)』 제00조의 규정에 의하여 00기관의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00 기관장 (인)

### 청렴시민감사관 서약서(비밀준수, 개인정보보호, 보안유지 등)

#### 서 약 서

성 명 : (인)

생년월일 :

본인은 『(운영규정)』 제00조(비밀준수 등)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겠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제00조  
00항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일지(부패예방 활동 등)

일 시	20 . . ( ), 00:00 ~ 00:00
장 소	○○○ 대강당, ○○○ 사무실 · 현장
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 가 : 홍 길 동 청렴시민감사관</li> <li>○ 방 법 : 서면 조사, 현장 방문 등</li> <li>○ 내 용 : 부패예방 등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내용</li> <li>○ 사 유 : 활동하게 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 · 수시 활동, 기관 요청, 민원 제기 또는 비리 제보 등</li> </ul> </li> <li>○ 청렴시민감사관 의견 : 제도 개선 검토 대상 등</li> <li>* 청렴시민감사관이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취약 분야에 대하여 실제 활동한 사항을 자유롭게 기재</li> </ul>
조치 내용 (조치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 가 : 해당기관(해당 부서 등)</li> <li>○ 일 시 : 조치 일시 기재</li> <li>* 현장 조치 등 필요시 장소 기재</li> <li>○ 방 법 : 활동 내용에 대하여 조치한 내용 기재</li> <li>* 공문, 메일 등 청렴시민감사관에게 회신 방법 포함</li> <li>*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 내용에 대한 기관의 조치 내용을 자유롭게 기재</li> </ul>

### 청렴시민감사관 회의록(전체, 수시)

제 회 ○○○ 기관 청렴시민감사관 전체(수시) 회의	
<b>회 의 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시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li> <li>○ 장 소 :</li> <li>○ 위원정수 :       명</li> <li>○ 참 석 자 :       명</li> <li>○ 불 참 자 :       명</li> <li>* 회의의 합의방식(합의제, 의결정족수)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 안건(주제)</li> <li>1.</li> <li>2.</li> </ul>	
○ 회의 내용(회의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 인</li> </ul>	
청렴시민감사관 _____ ㉠	청렴시민감사관 _____ ㉠
청렴시민감사관 _____ ㉠	청렴시민감사관 _____ ㉠
청렴시민감사관 _____ ㉠	청렴시민감사관 _____ ㉠
청렴시민감사관 _____ ㉠	청렴시민감사관 _____ ㉠

### 청렴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

회의일시	20 년 월 일, 〇〇 시	
참 석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렴시민감사관</li> <li>○ 기관장</li> <li>○ 지원부서(장)</li> <li>○ 해당부서(장)</li> <li>○ 기타 관계자</li> </ul>	
회의 주제		
회의 내용 (회의 결과)		
확 인	대표 청렴시민감사관 (서명·날인) 참석 청렴시민감사관 (서명·날인) (서명·날인) (서명·날인)	지원부서 징감사·기획부서장 등 (서명·날인) 해당부서 장 (서명·날인)

### 시정요구(권고)서

	제 호
	20 년 월 일
〇〇 기관장 귀하	
	〇〇 기관 대표 청렴시민감사관 홍길동 (인)
<p>「(운영 규정)」 제〇〇조 제〇〇항에 따라 20 년 〇〇월 〇〇일 활동한 ( )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권고)하오니 「(운영 규정)」 제〇〇조 제〇〇항에 따라 20 년 〇〇월 〇〇일까지 조치 결과를 회신(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활동 내용 (조사 결과)	
시정요구(권고) 취지	
요구(권고) 내용	

### 조치결과통보(회신)서

제 호  
20 년 월 일

○○ 기관 대표 청렴시민감사관 홍 길 동 귀하

○○ 기관장 (인)

「(운영 규정) 제○○조 제○○항에 따라 20 년 ○○월 ○○일 활동한 ( ) 사항과 관련하여 시정요구(권고)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음을 회신(통보)합니다.

요구(권고) 내용	○ 청렴시민감사관의 요구(권고) 사항(6하 원칙)
조치 결과 (조치 내용)	○ 기관(해당 부서 등)의 조치 사항(6하 원칙)
해당 부서	부 서 명 : 연 락 처 :                      담 당 자 :

### 청렴시민감사관 신분증(예시)

(앞면)

#### 청렴시민감사관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 기관  
청렴시민감사관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 기관장 직인

- ◎ ○○ 기관에서는 「○○ 규정」에 따라 '○○ 기관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이 증을 제시하면 ○○ 기관 소속·산하 관계자(공무원, 직원 및 관련자 등)께서는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분실 시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편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02-123-4567)

54mm × 85mm

(뒷면)

사 진

2.5cmX3.5cm

(탈모, 상반신,  
6개월 이내 촬영)

홍 길 동

Hong, Gil-Dong

○○ 기관

54mm × 85mm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발행일 2014년 12월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정부세종청사 7동 5층  
전 화 044-200-7165  
팩 스 044-200-7917

디자인/인쇄 초이스디자인 (044-868-2634~5)



청림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